

1. 녹색서구21위원회 구성 운영

시민, 기업, 행정이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모델과 발전 방향을 제시,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.

□ 추진배경

-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의제 21 채택
- 한국도 1996년 8월 「의제21」 국가실천계획 발표
- 1998년 12월 푸른광주21협의회 창립
- 2000년 9월 대통령자문기구로 지속가능한발전위원회 설치 - 대통령령
- 2002년 1월 광주광역시 서구환경기본조례 제정

□ 세부추진계획

- 『녹색서구21』위원회, 구성 - 2003. 3월중
 - 시민, 기업, 행정, 전문가, 그룹별 3 ~ 4인(총 20명 이내)
 - 녹색서구21 준비위원회 구성운영
 - 위원장, 부위원장 호선 및 사업 협의
 - 녹색서구21 위원회 사업발굴 및 선정
 - 녹색서구21 위원회 운영규정 초안작성
- 녹색서구21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- 2003. 4월중
 - 운영규정 기초안 방침 결정
- 녹색서구21위원회 중점실천 사업 추진 방향
 - 푸른광주21협의회실천사업(구 특화사업) 및 우리 구 자체사업 중 환경친화적인 의제사업
 - 생태, 녹지, 물, 환경, 대기 오염분야
 - 폐기물, 소비생활, 교통, 도시계획분야
 - 문화, 복지, 홍보분야

□ 기대효과

- 시민, 기업, 행정이 파트너쉽을 발휘하여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우리 지역에 적합한 모델과 발전방향 제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-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

2. 자연보호 생활화로 환경보전 실천

자연보호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로 주민의 의식제고 및 자라나는 세대에 조기환경 교육을 통해 스스로 참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민의 생활공간 조성

□ 추진 개요

- 환경보호기념일행사 및 자연보호활동 전개
- 1사1산1하천가꾸기운동
- 자연환경명예지도원 활동 활성화
- 도시건축물 입면녹화사업장 관리
- 야생조수보호기간 설정운영
- 환경보전 중점지도학교 지정 운영
- 자연환경보전 어린이 글짓기대회 개최

□ 세부추진계획

- 환경보호기념 행사 및 자연정화활동 -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일 외 4회
- 1사1산1하천 가꾸기운동 지정·운영 - 10개 기관단체(담당구역별 정화)
- 자연환경명예지도원 활동 활성화
 - 『작은실천운동』 캠페인 지속적인 전개
- 도시건축물 입면녹화사업장 사후관리 - 5,295m 19,150본
- 야생조수 보호기간 설정 운영 - 2003. 10 ~ 2004. 2월(4개월 간)
- 환경보전중점지도학교 확대 지정·운영
 - 학교별 환경정화 구역 지정 : 청소년 자원 봉사 활동 프로그램과 연계 실시
 - 환경기초시설 견학
 - 환경사진전시회
- 환경보전 어린이 글짓기대회 개최 - 서구 관내 25개 초등학교 대상

□ 기대효과

- 환경기념일행사 개최로 주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식 고취
- 환경보전운동의 실천을 통한 환경보전 계기 마련
-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
- 멸종위기 동·식물 보호로 자연생태계 보전

3. 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

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자동차의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환경개선에 필요한 기초적 투자자원 조달

□ 추진개요

- 부과대상
 - 시설물 : 연면적 160㎡ 이상인 건물(주거용 제외)
 - 자동차 : 자동차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연료 자동차
- 부과시기 - 매년 3월, 9월
- 법적근거 - 환경개선부담법 제9조

□ 세부추진계획

- 2003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
 - 시설물조사 : 2003. 1월
 - 자료대장정리 및 전산입력 : 2003. 2월
 - 부과 및 징수 : 2003. 3 ~ 4월
- 2003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
 - 시설물조사 : 2003. 7월
 - 자료대장정리 및 전산입력 : 2003. 8월
 - 부과 및 징수 : 2003. 9 ~ 10월
-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일소 대책 추진
 -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보 (500만원 이상)제공 : 신용보증기금
 - 체납자 보유재산 추적 차량 및 부동산 압류처분 확행
 -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: 2003. 11 ~ 12월

□ 기대효과

-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자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기여
- 체납자 채권확보와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

4.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

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관리강화로 대도시 대기질 악화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

□ 현 황

- 대기배출업소 - 53개소(목욕탕, 자동차정비업소, 소형 소각시설 등)
-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- 130개소(택지개발사업장, 부지 조성의 성토공사장 등)
- 생활악취배출사업장 - 436개소(음식물사료화공장, 상무소각장, 하수종말처리장, 자동차정비업소 등)
- 저황유 판매업소 - 28개소

□ 세 부 추 진 계 획

-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
 - 등급별 연 1 ~ 3회
 - 방지시설 정상운영 및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
 - 생활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해 관리강화 : 음식물 사료화공장 등
-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급별 지도점검 - 연 1회 이상
- 악취유발물질 소각행위 단속 - 고무, 피혁, 합성수지, 폐유 등
- 저황유 판매업소 및 대기배출업소 황함유량 검사
- 오존경보 상황실 운영 - 2003. 5. 1 ~ 8. 31(4개월 간)

□ 문제점 및 대책

- 규제 미만의 일반주택(다세대주택, 원룸) 공사장 등의 작업 소음과 음식점등의 생활악취로 인한 개인의 이해와 관련된 다수의 민원발생으로 업무량 증가
 - ⇒ 소음 저감시설 설치 유도과 소음저감 방법 작업요령 홍보
- 병커C유에서 청정연료(LNG) 교체대상 대기배출업소의 시설투자 기피
 - ⇒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교체시한(2006. 12월)이전에 자진 교체토록 유도

□ 기 대 효 과

- 대기 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통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

5.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

대도시 대기오염의 70~80%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 상시 단속 및 무료점검과 다수차량 확보회사를 방문·점검함으로써 차량관리자의 의식제고와 자율적인 차량 정비를 유도하여 쾌적한 대기질 유지

□ 현 황

- 단속목표 - 8,000대(단속 4,000, 무료점검 3,000, 방문점검 1,000)
- 배출가스 줄이기 가두캠페인 - 분기 1회 2일 및 주민홍보

□ 세 부 추 진 계 획

- 단속 및 점검종류
 - 단 속 : 매주 1 ~ 2회
 - 무료점검 : 매월 첫 주 3일(시와 합동점검 실시)
 - 방문점검 : 매주 1회
 - 택시회사(13), 화물회사(1), 관광회사(4), 관공서(10)
 - 다수 차량 확보회사 등
- 방법 및 점검대상
 - 휘발유 및 가스사용 차량 : 일산화탄소, 탄화수소, 공기과잉률
 - 경유사용 차량 : 매연
 - 배기관 파손 및 훼손여부
- 위반차량 조치
 - 대기환경보전법 관련규정에 의거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
 - 무료점검 및 방문점검 시 부적합 차량 : 자율정비 유도
- 홍 보
 - 분기 2일 이상 가두캠페인 및 홍보물 배포
 - 서구홈페이지 게시 및 소식지 개재

□ 기 대 효 과

- 단속보다는 지도위주의 행정으로 주민과 함께 대기질 개선
- 방문점검을 통해 차량관리자의 의식제고 및 대기오염물질 사전예방
- 무료점검을 통한 적발차량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경제적 부담 해소

6.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

폐수배출업소 및 생활오수배출시설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영산강 수계 내 오염행위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 사전예방

□ 현 황

- 폐 수 배 출 업 소 - 225개소(2종 : 1, 3종 : 1, 4종 : 1, 5종 : 222)
- 생활오수 배출시설 - 13,294개소
(오수처리시설 312, 단독정화조 12,958, 축산폐수 배출시설 24)
- 영산강수계 하천감시 구간 - 20.4km(광주천 8.8km, 영산강 11.6km)

□ 세부추진계획

-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
 - 배출업소 등급결정
 - 기 준 : 최근 2년 이내 업소별 위반횟수
 - 등급기준 : 3개 등급(청·녹·적색)
 - 배출업소 지도점검 : 년 1 ~ 3회(등급별 탄력적 점검)
- 생활오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- 년 1회
- 분뇨 등 영업 관련업 지도점검 - 년 1회
 - 대 상 : 2개소(남도위생, 명진정화)
 - 내 용 : 허가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
- 영산강수계 내 하천오염 감시활동 및 방제훈련
 - 영산강수계 하천순찰 : 연중(공익근무요원 활용)
 - 수질오염 사고예방 방제훈련 : 연 2회(상·하반기)

□ 문제점 및 대책

-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를 다수 경쟁 체제로 전환·운영에 따른 전산관리 프로그램 미구축 및 관리인력 부족
 - ⇒ 전산관리 프로그램 설치 예산(18,110천원) 확보와 전담원(공익근무요원) 2명 추가 배치

□ 기 대 효 과

- 하천순찰 및 폐수배출업소 점검으로 수질오염행위 사전 예방
- 분뇨 등 관련영업 업무를 개방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에게 업체 자율권 부여로 신속한 민원해결

7. 물 절약 실천 생활화 유도 및 저수조 관리

숙박업소 및 목욕업 등 물 다량 사용업소에 대하여 절수기기 설치로 물 절약 실천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저수조 관련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예방

□ 현 황

- 간이(전용)상수도 - 3개소(간이 2, 전용 1)
-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 저수조 - 203개소
- 물 다량 사용업소 - 213개소(숙박업 165, 목욕업 48)

□ 세 부 추 진 계 획

- 간이(전용)상수도 수질검사 및 관리강화
 - 수질검사 : 연 4회(분기별 1회)
 - 관리내용
 - 간이(전용)상수도 마을단위별 자율적 관리능력 제고
 - 수시점검 및 순찰활동으로 수질오염 물질 유입 예방
-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 저수조 관리
 - 저수조 관리 홍보 및 자율점검 홍보 : 연중
 - 저수조 청소실시 여부점검 확인 : 연 2회(상·하반기)
- 절수기기 설치사업
 - 시 기 : 2003. 1 ~ 2003. 3
 - 사 업 비 : 2,000천원(공공근로사업 재료비 활용)
 - 대 상 : 관내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동주택
 - 방 법 : 공공근로 인력(3명) 활용
 - 내 용 : 수도꼭지 내 감압밸브 설치
- 물 다량 사용업소 지도점검
 - 대 상 : 213개소(10실 이상 숙박업소 및 목욕장)
 - 위반업소 조치 : 행정지도장 발부 후 미 설치업소 과태료 부과

□ 문제점 및 대책

- 환경관련업무 이관 등 신규업무 확대에 의한 인력부족(상수도 사업본부 → 구)
 - 저수조 관리업무, 청소업 등록 및 간이(전용)상수도 관리업무 등
 - 절수기 설치 및 행정처분업무 등
- ⇒ 공공근로 인력(3명) 확보로 당면업무의 원활한 추진

□ 기대 효과

- 수질오염 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생활 환경 피해 예방
- 물 다량 사용업소에 대한 물 절약 생활화 실천유도